

[로스쿨 소식]

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

1. 시험일자 : 2019년 1월 8일(화) ~ 1월 12일(토), 4일간(1월 10일 : 휴식일)
2.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시험일자	시험시간 및 시험과목					입실시간
	시험과목	오 전		오 후		
		시간	문형(배점)	시간	문형(배점)	
1월 8일 (화)	공 법	10:00- 11:10	선택형 (100점)	13:30- 15:30	사례형 (200점)	- 오전시험 : 09:25 - 오후시험 : 시험 시작 35분 전 ※ 시험실개방 08:00
1월 9일 (수)				17:00- 19:00	기록형 (100점)	
1월 9일 (수)	형사법	10:00- 11:10	선택형 (100점)	13:30- 15:30	사례형 (200점)	
1월 10일 (목)				17:00- 19:00	기록형 (100점)	
1월 10일 (목)	휴 식 일					
1월 11일 (금)	민사법	10:00- 12:00	선택형 (175점)	14:30- 17:30	기록형 (175점)	
1월 12일 (토)	민사법 ·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(택1)	10:00- 13:30	민사법 사례형 (350점)	16:00- 18:00	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(택1) 사례형 (160점)	

3. 시험장소

응시표 좌석번호	시험장소		소재지
건국대001~건국대635	건국대학교	상허연구소	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※ 지하철 2·7호선 건대입구역
고려대001~고려대693	고려대학교	우당교양관	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※ 지하철 6호선 안암역
연세대001~연세대410	연세대학교	백 양 관	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※ 지하철 2호선 신촌역
한양대001~한양대557	한양대학교	제1공학관	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※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
부산대001~부산대330	부산대학교	국제관	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※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
경북대001~경북대254	경북대학교	제4합동강의동	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※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역
전남대001~전남대265	전남대학교	진리관	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※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 가역 (택시 또는 버스 이용)
충남대001~충남대473	충남대학교	백마교양교육관	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※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(택시 또는 버스 이용)

※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: 2018. 11. 22.(목) 09:00 ~ 2019. 1. 12.(토)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(<http://moj.uwayapply.com/>)를 통해 응시표 출력 →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
예) 좌석번호란에 “건국대063”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소(위 표 참조)이며,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“응시자 시험실 배치표”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,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.

☞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4. 응시자준수사항 등

가.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나.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

-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(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),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임시확인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-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, 신분증,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(책 등)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,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,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.
- 답안지,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, 법전, 기타 소지품(책 등)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,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.
-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,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.
 - ※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,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.

- 답안지에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,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
다. 시험시간 중

-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,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(포스트잇, 메모지, 책받침 등 포함)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(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).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※ 단,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·사례형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시험 종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).

라.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

-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·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·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- 답안지는 반드시 “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”(사인펜에 ‘컴퓨터용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)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(단,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).
- ※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마.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

-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,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
-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,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, 수정액·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,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시험용 법전에는 ‘포스트잇’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※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바. 시험 종료 시

-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,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.
- 회수된 답안지,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확인된 후,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.